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17시 15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1.04.08 09:56 조회수 217 등록자 윤상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 '20.6.2.부터 '21.6.1.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여주기로 약정한 건물주

감면율 해당건물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재산세 감면(한도 50%이내)

감면세목 '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신청기간 '21년 5월 ~ 7월말까지(상시접수)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문의처 세정과 재산세 담당 ☎ 061-270-3293

노출기간 : 2021-04-08 ~ 2021-07-31

URL : #none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20.6.2.부터 '21.6.1.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여주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율 : 해당건물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재산세 감면(한도 50%이내)

• 감면세목 : '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 신청기간 : '21년 5월 ~ 7월말까지(상시접수)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 담당 ☎ 061-270-3293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jpg (145 hit/ 56.9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보행자 최우선,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행사...

다음글
2021년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착돈) 지원 안내

MokPo - Si
Web Contents

